

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년 6월 20일
북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5월 29일, 정재동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5년 6월 20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발달장애인 보험의 보장내용에 현행 제3자 배상책임 외에 발달장애인의 상해를 추가하여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보험의 보장내용에 발달장애인의 상해를 추가함(안 제6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- 현행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험의 보장내용에 발달장애인 본인의 상해를 추가하여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) 주요 내용

- 보험의 보장내용에 발달장애인의 상해를 추가함(안 제6조).

3) 검토 의견

- 본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본인의 신체 상해에 대한 보장을 추가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